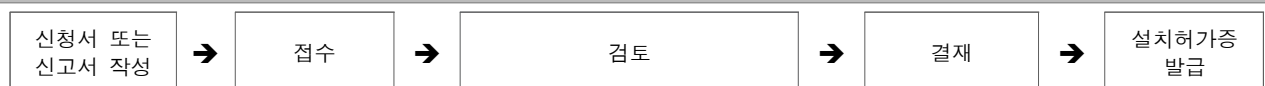


첨부서류	변경 허가	1. 다음 각 목의 서류(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가. 연료 및 원료의 예상 최대 사용량과 제품명 및 제품의 예상 생산량이 포함된 향후 5년간의 연도별 연료 사용량, 원료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을 예측한 명세서 나. 향후 5년간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연도별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다. 향후 5년간의 연도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저감계획서 라. 사업장의 배치도,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공정의 흐름도가 포함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마. 방지시설의 종류, 외형적 크기, 처리용량 및 설비용량이 포함된 방지시설의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 바.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사. 사용연료의 성분 분석서, 황산화물의 배출농도 및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(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41조제3항 단서에 따른 배출시설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 아.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제28조 각 호에 따른 방지시설의 설치 면제 관련 서류(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자.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가방지시설의 설계·시공 관련 서류(방지시설을 스스로 설계·시공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차.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제3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·운영 관련 서류(공동 방지시설을 설치·운영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카.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고체연료 사용승인 신청 관련 서류(고체연료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※ 신청 대상 사업장이 「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라목부터 카목까지의 서류를 갈음하여 「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4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. 2.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.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 원본	변경허가: 100,000원 (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이 추가되거나 배출허용총량이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변경신고: 수수료 없음 추가 할당 신청: 수수료 없음
	변경 신고	1.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하려는 서류 2.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 원본	
	추가 할당 신청	1. 「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추가 할당 신청: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첨부서류로 갈음합니다. 2. 「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추가 할당 신청: 다음 각 목의 서류 가. 「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나.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 원본 다. 「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5항 본문에 따른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기로 측정한 총량관리대상 대기오염물질 배출량(kg/년) 명세서 3. 「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추가 할당 신청: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	

처리절차

신청인 또는
신고인

처리기관

처리기관

처리기관

신청인 또는
신고인

처리기관: 기후에너지환경부,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